

신 문 섭  
 본협회 전 이사, 전 법제위원장, (주)대명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Sin Mun-seob, KIRA

# 못다한 이야기

- 정관개정에 대하여

## Behind Story- revision in articles of association

feature

지난 정기총회는 새로 신축된 회관에서 열린 의미 있는 총회였다.

이번 총회에서 제1호의 안건으로 정관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몇몇 대의원들이 개정정관(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구체적인 문안 정리 없이 안건이 통과 된 것이다. 회장선거에 들떠있는 대의원들은 도무지 정관개정(안)에 대하여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에 대하여는 경청하려 들지도 않았으며 일부의 대의원들은 지루해 하기까지 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렇게 통과된 개정정관 몇몇 조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 문제를 지적 하니 앞으로 정관을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이글이 참고가 되어 정관이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글을 쓴다.

우리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탄생한 전문가 집단이다. 건축사법은 우리 존재의 기본법이다. 그러므로 건축사법의 정신과 문안 등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탄생되었다.

사법 제31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협회 설립 목적을 적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정관 제2조에 대한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 전 정관에는 사법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의 설립목적을 강화한 데 비해 개정 정관의 목적에는 추상적인 목적 설정으로 사법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건축사협회 설립목적은 가능한 한 사법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다.

정관 제7조(회원)2항 1호의 준회원과 4호의 참여회원, 5호의 학생회원에 관한 개정이다.

상기 준회원(미등록 건축사와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건축사)과 참여회원(건축 관계자 및 건축사보), 학생회원(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에 수학중인 학생)은 우리 협회에 입회절차를 밟지 않아도 회원이 되도록 되어있다. 정회원이 입회절차를 거쳐 회원이 되는데 준회원과 참여회원이 입회절차 없이 협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회원은 승인과정에서 통과된 개정안과 다르게 개정 전 규정으로 정리됨)

제19조 (임원)중 비상근 부회장이 2인이 증원된 4인, 이사는 비상근 부회장 2인 포함 7인이 증원 되었다. 집행부는 제안 설명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거나 협회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과연 인원의 증원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가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과연 21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능률적 인가?

우리 정관에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수년간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지 아니하고 회장에게 선출을 위임함으로써 이사 선출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사의 선임이 회장선거의 표 몰이에 미끼로까지 전락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개선택은 없을까. 차제에 이사를 회장과 패키지로 묶어 총회에서 함께 신임을 받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또 협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책임 이사제(예를 들면 총무이사, 재무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 법제이사, 신문 및 건축사지 편집이사, 공제사업이사 등)를 도입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능률도 제고 하고 전문성도 살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부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 하였으면 한다. 부회장에게도 일정회무를 맡겨 협회의 업무도 파악하고 능력도 검증하여 차기 회장의 후보를 가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협회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된다. 그리고 부회장은 지역적으로 안배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해 왔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상근 부회장과 상근이사가 등기이사가 되는 것이 타당 한가 하는 문제다. 세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이 건축사협회는 개업건축사만으로 구성되도록 사법에 명시 되어 있다.

그런데 개업건축사가 아닌 자가 등기 이사가 되어 건축사협회의 중요 사안들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사법 정신과 현실적인 문제에 합리적이나 하는 문제다. 일반 법인에서 사외 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31조 (위원회)를 검토해 보자.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8개 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다. 즉 8개 위원회는 꼭 설치하여야 하는 기본 위원회인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정관에는 건축위원회와 공제사업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금년 사업계획에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건축연구원을 운영하며, 건축문화 진흥사업 등을 하겠다고 예산 및 사업 승인 받았다. 이런 사업들을 어느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행

해 나가려고 기존 위원회를 폐지했는지, 사업은 추가하면서 사업시행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위원회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9장 건축사회의 제 조항에 대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9장 전체를 폐지하고 가칭 “건축사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세칙을 각 건축사회에서 마련하여 사용하게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단체의 정관에도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 까지를 정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개정정관과 같이 일부는 정관에 규정하고 일부는 건축사회 회칙으로 규정토록 함은 협회 조직의 일관성을 위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된다.

제55조 (회비 미납의 징계)의 제1항 3호의 징계(제명)권한을 건축사회 회장에게 위임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의 소지가 있으니 건축사회에서 3호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모든 회원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로써만이 회원을 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정관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은 이런 정도로 언급하고 자구의 문제나 개정안으로 제안해서 총회에서 통과되었으나 건교부의 승인과정에서 승인받지 못한 조항, 사족같이 필요 이상으로 규정 되어있는 규정에 대하여 지적할까 한다.

제5조(사업)에서 제1항 제1호 ‘건축사 업무 개선 발전’ 과 제18호 ‘회원 업무 개선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과 무엇이 다른지. 제5호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교육과 자격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업’ 이 승인과정에서 종전규정으로 환원되었고, 제15호의 ‘복리’ 를 ‘복지’ 로 바꾸어 통과되었다가 ‘복리’ 로 환원되었으며, 제20호 ‘남북건축문화 교류사업’ 도 건교부 승인과정에서 삭제되었으며, 제2항 ‘협회는 제1항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것은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중복되지 않는지(다행히 확정된 정관에는 통과된 2항이 삭제됨) 제3항에 별도의 법인을 설치하겠다고 규정한 것도 승인과정에서 삭제되었으니 총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개정안 제5조 제4항(확정된 정관 제2항 ‘협회는 제1항 제6호의 공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 6호 회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제사업)과 제16조 (의결사항) 제1항 제5호(윤리규약,.....공제규정, 제정 및 폐지)와 연계하여 생각하면 불필요한 사족 같은 조항이 되는 것이다.

제8조(입회)제3항은 제6조(제 규정)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사족 같은 규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9조(회원의 권리) 제2항의 규정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에서 제19조의 문제점을 논의 했듯이 이사회에서는 외부인사의 참여가 문제가 되더라도 위원회에서는 외부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여 우리 건축사들이 착안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하여 외부인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도 협회발전을 위하여 바람직 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외부 인사들의 활발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참여자에게 의욕을 북돋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며 위원회는 “협회의 운영, 사업 및 예산 등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3조(설치 및 구성)제3항 단서의 규정은 사족에 가까운 규정이다. 어느 단체나 어느 회의에서 본인과 관계되는 안건이 상정되는데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는가?

제15조(총회의 소집과 구분) 제3항 단서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감사 1인이 유고시는 1인의 감사를 선임하여 2인으로 감사업무를 수행케 하고, 2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하여야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해석은 감사가 총회소집권한을 가지면 감사가 결원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라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제17조(성립 및 의결) 제3항 회장의 불신임을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는데 2/3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절반 이상의 대의원이 불신임했다면 과연 그 회장이 회원의 대표로서 회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는가?

제22조(임원의 임기)제2항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한 날로부터 그 직무를 ‘개시’ 한다. 라고 개정했는데 취임한 날이 개시일이고 계속하여 업무를 행하기 때문에 ‘수행’ 한다. 라는 종전 문구를 사용함이 타당하며, 신설된 제5항(임원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도 사족 같은 조항이다. 너무도 당연한 사회의 불문율을 굳이 성문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32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의 임기에서 왜 유독 위원들의 임기만 1년으로 하는지,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2년으로 하고 매년 1/2씩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회장의 직선문제다.

부회장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만 각시도 건축사회 총회 시에 모든 회원이 참여하여 선출하는 것이 회원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회장의 권위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이번 정관 개정 시에는 시기를 놓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늦게나마 의견을 내어 기록으로라도 남겨두고자 함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추후 정관 개정 시 참고하게 함이고 또 총회에서 통과된 정관이 건교부 승인과정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승인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되겠기에 과거 정관 개정에 관여했던 전 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이 글을 쓴다.

그리고 협회는 아무리 정관과 제도, 규정 등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회장)이기 때문에 회장의 트인 생각과 멀리 내다보는 혜안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의 등용이 있어야만 협회가 발전할 것이다.

끝으로 개정 정관이 통과되고 건교부 승인을 무사히 받으리라는 전제하에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안건들 중 정관 승인과정에서 건교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안건의 근거가 상실된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가는지 지켜 볼 일이다. ■